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9.

발 의 자 : 소병훈 · 박희승 · 허영  
안태준 · 부승찬 · 김교홍  
한민수 · 민형배 · 서영석  
이주희 · 안호영 · 이언주  
김영진 · 이개호 · 홍기원  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.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장벽은 여전히 높으며, 동선상의 단차,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등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임.

이러한 문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,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·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

고,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
(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).

##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·방법 등에”를 “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·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 방법·절차 등에”로 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,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·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.



